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염병관리 체계를 시급히 강화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9.29. 공포, '20.12.30. 시행 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위기 상황에서도 정보 공개시 제외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연계 정보시스템을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 개정사항 중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야하는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하는 정보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다고 판단되어 정보 공개 시 제외할 정보로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을 규정함

나. 감염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 규정(안 제22조의3 신설)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수집·관리·보유·처리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적사항의 개인정보 종류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를 규정함

다. 감염병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규정함

라.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8조의6 신설)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 대상, 심리지원 업무 위탁대상 기관을 규정함

마.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안 제26조의3, 안 제28조의2, 안 제32조의3, 별표1의3)

전원등 조치권자에 보건복지부장관 포함,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 포함, 조항 이동,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추가 등 법률 개정사항 반영, 치료 및 격리의 근거 법 조항 보완, 감염병 구분 변경 사항 삭제 등 일부 미비점 보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성별
3. 나이
4. 거주지 주소(읍·면·동 이하)
5. 그 밖에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정보

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요청 등) ① 법 제40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국민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직업

2. 감염병환자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출입국관리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연락처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 및 연락처

② 법 제4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감염병 신고, 보고 및 통보 자료
2.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 자료
3.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자료
4. 법 제76조의2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자료
5.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시설, 의약품 및 장비 등 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2조의4(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연계 시스템) 법 제40조의5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시스템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3.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에 따른 질병진단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8. 「여권법」 제8조에 따른 여권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관리·치료의 업무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제23조 중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3항·제7항”으로,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42조제2항, 제47조제3호 및 제49조제1항제14호”로 한다.

제2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진단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4호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6(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등) ①법 제70조의6제1항에 따른 현장 대응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2. 법 제60조부터 제60조의3까지에 따른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3.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3. 그 밖에 심리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그 밖에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3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을 “제49조, 제50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감염병환자등·감염병의심자”로 한다.

9의2. 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별표 1의3 제1호나목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u>성명</u> 2. <u>성별</u> 3. <u>나이</u> 4. <u>거주지 주소(읍·면·동 이하)</u> 5. 그 밖에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정보
<u><신 설></u>	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요청 등) ① 법 제40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u>감염병환자등이 국민인 경우</u> : <u>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직업</u> 2. <u>감염병환자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u>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출입국관리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외국인등록

에 관한 정보 및 연락처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

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 및 연락처

② 법 제40조의5제2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감염병 신고, 보고 및 통
보 자료

2.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
본감시 등 자료

3.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자료

4. 법 제76조의2에 따른 감염병
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
한 자료

5.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시설, 의약품 및 장비 등
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관리

<신 설>

· 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서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2조의4(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

스템의 연계 시스템) 법 제40조

의5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
시스템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
신망

3.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
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
스템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시스템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에 따른
질병진단정보를 처리하는 정

	<u>보시스템</u>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 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 <u>보시스템</u> 8. 「여권법」 제8조에 따른 여 권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 <u>템</u>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 록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하는 <u>정보시스템</u>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관리 · 치료의 업무를 위하여 질병 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 <u>스템</u>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自 家)치료 및 시설치료,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제2 항 및 제42조제3항·제7항----- 법 제42조 제2항, 제47조제3호 및 제49조 제1항제14호-----

2와 같다.	--.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 차) ① ~ ④ (생 략)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 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 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 관의 장, 시설의 장 또는 시·도 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u>질병관리청장</u> 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 ----- ----- ----- -- <u>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장</u>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u>질병관리청장</u> 은 제5항에 따 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시·도 간 전원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⑥ <u>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장</u> ----- -----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방역관 등의 임명) ① <u>질병관리청장</u> 은 법 제60조의3 제2항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하 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명장에는 직무수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 다.	제26조의3(방역관 등의 임명) ① <u>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 외 및 감액기준) ①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	제28조의2(손실보상금의 지급제 외 및 감액기준) ① ----- -----

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법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 ~ 7.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6조제3항 -----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법 제70조의6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유행 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2. 법 제60조부터 제60조의3까지에 따른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3.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3. 그 밖에 심리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그 밖에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보건소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병 표본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10.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u>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감염병의 방역·예방 조치에 관한 사무</u> 11. ~ 13. (생략)	----- ----- -----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u> 10. ----- <u>제49조, 제50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감염병환자등·감염병의심자</u>----- 11. ~ 1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연락처	(043) 719 - 7128 (043) 719 - 7136